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월 12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3년 1월 12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의 기관 명칭 변경과 신설된 기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안 제30조제2항제2호)
 -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
- 신설된 기관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반영(안 제30조제2항제2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다목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 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생 략) 2. 정책복지위원회 가. (생 략) 나. (생 략) 다. <u>충북인재양성재단</u>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사. <u><신 설></u> 3. ~ 6. (생 략) ③ (생 략)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 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정책복지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u>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u>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u>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u> <u>관한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1. 9. 24. 제정)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22. 10. 7. 제정)

제2조(설립)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2. 12. 개정)

제9조(중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신성장산업육에 두는 과)”를 “(과학인재 육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과학인재국에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육성과, 청년인재육성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 ② 과학인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학기술정책과장·산업육성과장·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⑤ 청년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공감정책 또는 그 사업 개발 및 지원 총괄
 2.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관리
 3.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4.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청년의 사회·문화 등 참여 확대
 7. 청년희망센터 청년활동 지원 등 운영
 8. 청년 및 대학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9. 대학 연계 청년정책 사업 개발 및 행사 지원
 10.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1. 청년·학생 진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12. 청년 취업·창업 지원 총괄
 13.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육성
 1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15. 대학·기업 등 취업·창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16. 청년 직업능력개발 추진
 17. 청년창업 기반조성 지원
 18.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9. 청년창업자 재도전 지원
 20.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21. 교육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2. 초·중·고교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5.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26.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